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77 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김성원·김선교·박충권

이종배 · 김소희 · 김종양

송석준 · 김태호 · 고동진
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투,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있음.

그런데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,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0조).

법률 제 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 제목 "(전사자·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)"을 "(특별진급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"심사"를 "심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전투,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대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"을 "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"으로, "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"를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단서"를 "각 호 외의 부분 단서"로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장교의 경우: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
- 2. 부사관의 경우: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진급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 <u>(전사자·순직자 및 전투</u>	제30조 <u>(특별진급)</u> ①
유공자의 진급) ① 전사자와	
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	
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	
수 있다. 다만, 장성급 장교로	
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	
발위원회의 <u>심사</u> 를 거쳐야 한	<u>심의</u>
다.	
② 전투,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	②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
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	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
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	
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	
고 <u>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</u>	<u>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</u>
<u>사</u> 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	<u>절차</u>
있다. 다만, 소령 이상으로 진	
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	
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	
한다.	
<u><신 설></u>	1. 장교의 경우: 장교진급 선발
	위원회의 심의
<u><신 설></u>	2. 부사관의 경우: 부사관진급
	선발위원회의 심의
③ 제2항 <u>단서</u> 에 해당하는 사	③ <u>각 호 외의 부분 단서</u>

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 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 거나 퇴역(退役)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. <신 설>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
급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